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64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 송옥주・이수진・한정애

홍기원 • 윤준병 • 전종덕

한민수 · 김남희 · 주철현

박해철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법률 제 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	
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 제한) ①・② (생	제13조(행위 제한)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	③
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	
상의 간척사업, <u>공유수면매립사</u>	<u>공항이나 항만의</u>
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	
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